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2020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I. 감사 개요

- 수감기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감사기간: 2020. 11. 16. ~ 11. 20. / 5일간
- 감사인원: 법무감사담당관실 김철용, 황기영, 장기순 / 3명
- 감사범위: 이전 자체종합감사('18. 11. 2.)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II. 감사 결과

- 처분 요구 건수: 10건
 - 시정요구 2건, 기관주의 3건, 개선요구 1건, 통보 4건

III. 처분 요구 내역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일반	시정 완료 (금액)	모범 사례 (인원)		
10	905	-	-	2 (905)	-	3	1	-	4	-	-	-	-

IV. 지적 및 처분 조치 내용(요약)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1	통보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매뉴얼 및 시스템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중 직접조사는 입수경위, 보존처리(양호, 불량, 보존처리 필요)와 가치 등급(A, B, C, F)로 구분토록 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조사(전적류) 항목에는 입수경위(“20년만 있음), 보존처리 항목과 가치 등급 항목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 2013년에 국외문화재 DB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2017년에 마련된 실태조사 매뉴얼 조사항목인 보존처리, 등급 항목은 미포함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매뉴얼 및 DB시스템 개선 	
2	통보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도서 관리 및 구입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18~’20.10월 말까지) 구입한 도서의 등록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33건 1,291권 중 222건 338권(26.1%)이 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부서간 도서 중복 구입, 부서내 동일 도서 구입 등 도서 구입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록 및 도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3	기관 주의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과 2020년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 재물조사 실시하는 등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4	개선 요구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여비규정 개정 필요</p> <p>○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 낭비 방지(’14.10월)방안을 적용하여야 하나, - 국외재단의 국외여비 기준표가 권익위 권고안보다 상향 지급</p> <p><처분내용></p> <p>○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여비규정 개정</p>	
5	시정 요구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회계관직 직원의 겸직 부적정</p> <p>○ 겸직이 금지된 재무관 보조(지출원인행위담당)와 지출관(지출담당) 업무를 직원 1명(일반직 4급)이 겸직 중</p> <p><처분내용></p> <p>○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관 보조와 지출관 업무 담당자 분리</p>	
6	통보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국외문화재 정보 공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필요</p> <p>○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등으로 축적된 DB에 대한 대국민 공개 미흡</p> <p>○ 홈페이지 발간코너의 발간자료 42건 중 1건만 다운로드 가능</p> <p><처분내용></p> <p>○ 국외문화재에 대한 결과물 및 홈페이지 발간자료를 대국민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p>	
7	기관 주의	<p><지적내용></p> <p><input type="checkbox"/> 지출 관련 증거서류 보관 미흡</p> <p>○ 국외소재문화재단 「회계규정」,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따라 지출 증거서류는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 계약서, 지출결의서 관련 서류만 각각 보관</p> <p><처분내용></p> <p>○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모두 충족하도록 관련 회계규정 등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 준수</p>	

연 번	처분 종류	지적 및 처분내용	비 고
8	통보	<p><지적내용></p> <p>□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사업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2020년 동안 38건에 대해 보존처리 및 활용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20건, 독일 8건, 일본 4건 등 일부 국가에 집중(84%) ○ 심의위원 풀 확대 및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기, 목공, 의복 등 분야별 심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구분이 없고 분야별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위원수가 일정하지 않음 - 2020년 심사의 경우 분야가 다른데도 같은 위원 2명이 3회 모두 참석하는 등 심사위원 풀이 협소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국가 및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공모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9	기관 주의	<p><지적내용></p> <p>□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벽체조성 공사” 등 9건은 과업목적이 같은 4개의 사업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 분할하여 9건으로 수의계약 ○ “국외문화재 DB자료 입력 및 활용사업 용역”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에 한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2019년에는 개인과 수의계약(용역계약) 체결 - 2020년도는 인건비(일용임금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운영비(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사례비 형식으로 지급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철저 	
10	시정 요구 (환수)	<p><지적내용></p> <p>□ 면세사업자와 계약 후 계약금액 미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한 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 <p><처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지급된 부가가치세 905,450원 환수 	